

월요 광장

검찰개혁과 기소편의

김하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프랑스 혁명은 형사사법의 역사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소위 규문주의에서 탄핵주의로의 변화가 그것이다. 규문주의 아래에서는 기소권과 재판권이 하나의 국가기관에 집중되어 행사되었지만 탄핵주의 아래에서는 기소권과 재판권이 분리되어 서로 다른 기관에 맡겨지게 되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절대왕권의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사되던 국가형벌권을 제한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도 규문주의에서 탄핵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쳤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식의 원님재판이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화된 서구식 재판제도로 바뀐 것이다.

우리나라의 입법자는 검찰에게 소추기관으로서의 독립적 지위를 부여함과 동시에 소추재판권마저 허용하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기소 여부에 대한 우리나라 검찰의 권한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하였다. 그래서인가? 우리나라 검찰은 창설이래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검찰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최근 들어서 오히려 국민들의 불신과 비난이 커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작은 상황은 몇몇 부도덕한 검사들의 비위사실 때문이라기보다는 검찰이 기소독점권과 기소재량권을 함께 보유하는 제도적 측면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누구든지 기소권을 독점하고 이에 더하여 기소재량권마저 가지게 된다면 스스로 이를 남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 검찰은 검사동일체라는 조직원리로 무장하여 상명 하복이 체질화되어 있다.

대통령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검찰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검찰의 기소재량권은 정치적 압력과 침략에 의해 좌우될 위험성도 상존한다.

실제로 검찰은 내란죄의 수괴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전두환을 처음에는 불기소한 적이 있다. 최근 고강도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CJ그룹 총수에 대한 수사가 학막으로 연

결된 이명박 정부의 퇴장과 더불어 가속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검찰의 기소재량권 남용은 비록 권리이나 금액에 굽하여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다.

소위 전관예우라고 표현되는 봐주기 수사도 기소재량권이 남용되는 전형적 사례이다.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수많은 사건 중 특히 일부만을 조사하여 기소하고 나머지는 모두 불문에 부치는 식의 자의적인 사건처리방식이 수사단계에서 소위 전관으로 예우를 받는 변호사에게 사건이 몰리는 현실적 이유가 아니겠는가?

검찰은 이러한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여전히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아닌 검찰의 기소독점권과 기소재량권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검찰개혁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자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로 하루속히 기소법 정주의를 채택하여 기소권이 검사들의 자의에 휘둘리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배제해야 한다. 물론 업무족증이라는 기소법 정주의 단점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륙법계의 원조격인 독일 형사소송법은 기소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독일의 검찰은 법률의 파수꾼으로서 세상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평가의 배경에는 기소독점주의를 보완하고 있는 기소법정주의라는 제도적 장치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독일의 검찰은 원칙적으로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의무가 있고,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반드시 기소하여야 한다. 검찰조직 내외를 막론하고 압력이나 청탁이 개입할 여지를 제도적으로 봉쇄해놓은 것이다.

물론 독일의 검찰도 우리나라의 기소유예에 해당되는 '절차중지'라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의 절차중지는 법정형이 1년 미만의 가벼운 죄에 국한되고, 미리 법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우리나라의 검찰개혁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자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로 하루속히 기소법 정주의를 채택하여 기소권이 검사들의 자의에 휘둘리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배제해야 한다. 물론 업무족증이라는 기소법 정주의 단점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은 합리적인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용의 묘를 살리면 해결된다고 본다.

법조칼럼

변호사의 복제에 관한 규칙(?)

에 관한 규칙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한편 변호사의 복장규정은 무엇일까요? 복장 간소화가 논의되고 있는 차에 변호사의 복장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법관이나 검사가 아니니 위 규칙들에 있을 리 만무하고 훨씬 너무 자유로운 복장은 법정 내의 권위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염려와 관련이 있을까하여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았는데 위 규칙에도 복장과 관련한 규정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에 관한 거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변호사법에도 변호사의 복장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양복·정장과 넥타이를 매고 있는 변호사의 법정내 모습이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전 너머나 당연하고 익숙한 대시 정장 상의 재킷과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는 방안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의견이 많았는지 궁금합니다.

법관 등의 법복 착용에 대한 것은 법관 및 법원사무관 등의 복제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있는데, 위 규칙은 법관 등은 법복을 입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색깔은 물론 제식과 모양 까지 별도로 두는 등 상당히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사의 경우도 검사의 법복

법관은 법정에서 법관 복을 입는다고 규정해 이때부터 변호사의 복장에 관한 규정이 법규에서는 정식적으로 자리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넥타이를 맨 정장을 당연시해 왔던 것은 그동안 유지돼 왔던 관례에 따라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춘 복장을 착용하는 것이 법정에 절차에 부합한다고 생각해온 것으로 추측됩니다.

사법연수원 시절 몇몇 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거의 비슷한 색깔의 양복을 입고 도여 있는 것을 본 아내는 경쟁색이나 그와 유사한 색깔 외의 양복을 입어서는 안 되는 것이 나는 질문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듯 거의 정해진 복식(?)에 대한 의심을 해본 적이 없는데 법원에서 먼저 복장간소화 논의를 했다고 하니 법조계도 참 많이 변화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과거에 권위를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내용보다는 형식을 앞세워 만들고 지키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변호사들도 법복을 입었던 시절을 지나 이제 정장과 넥타이 차림의 복장까지 탈피하자는 것을 보며 세상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형식보다는 내용으로 법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는 시대의 요구로 들립니다. 아무리 형식에서 탈피하자고 한들 트레이닝복을 입고 슬리퍼를 신고 법정에 들어오는 변호사를 만날 리야 있겠습니까?

사실 복장간소화 논의가 나온 것은 이미 몇 년 전이었습니다. 상의 정장도 탈의하자 는 식의 논의까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넥타이만이라도 매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이 꽤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얘기가 법원에서 공식화됐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법원에서 탐탁지 않게 생각했는지 변호사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였는지 대충 넘어갔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논의가

더 본격화된 것은 전력수급문제 때 공공기관의 냉방장치 가동이 문제되면서부터입니다.

땀이 많지 않은 체질이라 남들보다 더위에 덜 민감한 것은 사실이나 사람이 가득 찬 냉방장치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법정에 앉아있는 것은 곤혹입니다. 뒤에서 작은 선풍기를 틀어준다고는 하나 두꺼운 법복을 입고 재판을 하고 있는 법관들을 볼 때는 참 고생이 많겠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지금과 같은 냉방장치가 전혀 없었던 시절의 선배들은 모두 법복을 입고 어떻게 재판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법복을 입은 변호사의 모습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겠구나라는 상상도 해봅니다.

과거에 권위를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내용보다는 형식을 앞세워 만들고 지키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변호사들도 법복을 입었던 시절을 지나 이제 정장과 넥타이 차림의 복장까지 탈피하자는 것을 보며 세상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형식보다는 내용으로 법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는 시대의 요구로 들립니다. 아무리 형식에서 탈피하자고 한들 트레이닝복을 입고 슬리퍼를 신고 법정에 들어오는 변호사를 만날 리야 있겠습니까?

1000명 이상 선발된 변호사를 아직도 우리 사회가 엘리트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사회적 균형 감각이 없고 올바른 역사인식과 상식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법리를 논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들은 특히면 망언을 일삼는 일본의 극우인을 하시모토 시장과 뭐가 다른가.

또 특정지역에 대해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독설을 거침없이 배설한 것을 일베 사이트가 꾀 날카와 전국에 도배질하여 사회 건강성을 파괴한 점에 국민기부감은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불찰주와 전선을 지키고 있는 60만 우리 국군을 우롱하고 모독한 것이다. 얼마나 나쁜가. 온라인상에서 설쳐 되는 '울인코리아, 일베 사이트'를 검색해 보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화가 치민다. 그곳에는 특정지역에 대한 혐오스런 온갖 요설과 궤변 잡설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럼에도 그것을 단속하거나 폐쇄조치가 없었다는 게 유감이다.

요즘 사회분위기가 경직되어 가고,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우들의 행태를 목도한다. 이런 일련의 행위가 갈등이고 분열 아닌가. 요컨대 자유민주사회를 병들게 하고 이분화 시키는 선동적인 글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주길 바란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관리 엉망으로 드러난 여수 '검은 비' 사건

지난달 11일 오후 8시께부터 30분간 여수시 유품면 조화리 일대에 내렸던 '검은 비'는 부근 유품면단의 H사 폐기물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남도, 광양만경권자유구역청, 여수·순천·광양시,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은 유품면단 내 8개업체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H사 폐기물에 의한 분진 때문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환경청은 H사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산하 환경감시단에 보강 조사를 시지했다고 하지만 이 정도 대책으론 안 된다. 여수시가 진행하고 있는 능작물 피해 여부 외에 주민들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수질·대기·토양오염 등에 대한 정밀 조사도 병행해야 한다.

차제에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해 항구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찾은 '검은 비'에도 관계기관이 주민들의 민원을 묵살하고, 방치해온 건 염연히 직무유기다.

불량 음식재료 유통, 수수방관 안 된다

서민들이 즐겨 먹는 음식재료의 위생 상태가 심각하다. 돼지 곱창·족발 등의 유통과정이 불결하고, 여름철의 대표적인 보양식재인 낙도 대량으로 밀도축제 거래되는 등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관리·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니 되레 불안감을 키우는 꼴이다.

최근 전남경찰에 적발된 유통업자 2명은 허가도 받지 않고, 폐지 4만1000마리 분의 머리와 곱창 등 부산물(4억 8000만 원 상당)을 시장에 불법으로 판매했다고 한다. 또, 전남도 소속 검사관인 공무원 4명은 이들의 불법 유통을 묵인해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5월에는 불법 유통업자 6명이 구례·순천 등지에서 비닐하우스 축사를 만들고, 털을 밀도 축한 뒤 전남 동부지역 관광지 인근 280여 개 식당에 대량 낙품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부정식품은 이제 축산물에만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파고 들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음식물에 상하기 쉽고, 이를 섭취했을 때 탈이 날 우려가 크다. 위생 당국은 먹을거리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관리로 주민들의 건강에 더욱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無等鼓

1968년 프랑스 파리, 치과에서 신문을 보던 열일곱살 고예수 필리프 프티는 가슴이 세차게 뛰는 걸 느꼈다. 미국 뉴욕에 세계 최고 높이의 세계무역센터가 건설되는 소식을 접한 그는 인생의 목표를 정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쌍둥이 빌딩 사이를 외출 하늘 놓고 건너겠다는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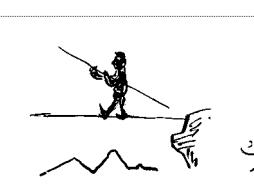
필리프는 이 때부터 건물 완공을 기다리며 자신의 몸에 동참할 친구들을 모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프랑스와 미국을 오가며 공사 현장에 잠입해 건물의 구조를 전문으로 파악하고 파리 노르트담 성당과 시드니 하버 브리지를 외출로 건너며 전의를 다진다.

6년의 기다림 후 드디어 D데이, 1974년 8월 7일 오전 6시45분, 길을 걷던 뉴욕 시민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탄성을 질렀다. 110층, 지상으로부터 411.5m 위에 필리프가 섰다. 그는 아무런 안전 장치도 없이 균형을 잡을 땐 하늘에 걸터앉아 천장을 향해 헛기침을 했지만, 그의 뒤에는 높은 쌍둥이 빌딩 사이를 외출 하늘 놓고 건너겠다는 꿈.

그가 이번에 횟단에 성공한 곳은 오래전 필리프가 시도했다 뜻을 이루지 못한 장소다. 필리프의 꿈은 세월을 건너 그에게 이어졌다. 결실을 맺었다.

/김미은 문화부장 mékim@kwangju.co.kr

외줄 위의 남자



1968년 프랑스 파리, 치과에서 신문을 보던 열일곱살 고예수 필리프 프티는 가슴이 세차게 뛰는 걸 느꼈다. 미국 뉴욕에 세계 최고 높이의 세계무역센터가 건설되는 소식을 접한 그는 인생의 목표를 정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쌍둥이 빌딩 사이를 외출 하늘 놓고 건너겠다는 꿈.

필리프는 이 때부터 건물 완공을 기다리며 자신의 몸에 동참할 친구들을 모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프랑스와 미국을 오가며 공사 현장에 잠입해 건물의 구조를 전문으로 파악하고 파리 노르트담 성당과 시드니 하버 브리지를 외출로 건너며 전의를 다진다.

6년의 기다림 후 드디어 D데이, 1974년 8월 7일 오전 6시45분, 길을 걷던 뉴욕 시민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탄성을 질렀다. 110층, 지상으로부터 411.5m 위에 필리프가 섰다. 그는 아무런 안전 장치도 없이 균형을 잡을 땐 하늘에 걸터앉아 천장을 향해 헛기침을 했지만, 그의 뒤에는 높은 쌍둥이 빌딩 사이를 외출 하늘 놓고 건너겠다는 꿈.

그가 이번에 횟단에 성공한 곳은 오래전 필리프가 시도했다 뜻을 이루지 못한 장소다. 필리프의 꿈은 세월을 건너 그에게 이어졌다. 결실을 맺었다.

/김미은 문화부장 mékim@kwangju.co.kr

1968년 프랑스 파리, 치과에서 신문을 보던 열일곱살 고예수 필리프 프티는 가슴이 세차게 뛰는 걸 느꼈다. 미국 뉴욕에 세계 최고 높이의 세계무역센터가 건설되는 소식을 접한 그는 인생의 목표를 정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쌍둥이 빌딩 사이를 외출 하늘 놓고 건너겠다는 꿈.

필리프는 이 때부터 건물 완공을 기다리며 자신의 몸에 동참할 친구들을 모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프랑스와 미국을 오가며 공사 현장에 잠입해 건물의 구조를 전문으로 파악하고 파리 노르트담 성당과 시드니 하버 브리지를 외출로 건너며 전의를 다진다.

6년의 기다림 후 드디어 D데이, 1974년 8월 7일 오전 6시45분, 길을 걷던 뉴욕 시민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탄성을 질렀다. 110층, 지상으로부터 411.5m 위에 필리프가 섰다. 그는 아무런 안전 장치도 없이 균형을 잡을 땐 하늘에 걸터앉아 천장을 향해 헛기침을 했지만, 그의 뒤에는 높은 쌍둥이 빌딩 사이를 외출 하늘 놓고 건너겠다는 꿈.

그가 이번에 횟단에 성공한 곳은 오래전 필리프가 시도했다 뜻을 이루지 못한 장소다. 필리프의 꿈은 세월을 건너 그에게 이어졌다. 결실을 맺었다.

/김미은 문화부장 mékim@kwangju.co.kr

1968년 프랑스 파리, 치과에서 신문을 보던 열일곱살 고예수 필리프 프티는 가슴이 세차게 뛰는 걸 느꼈다. 미국 뉴욕에 세계 최고 높이의 세계무역센터가 건설되는 소식을 접한 그는 인생의 목표를 정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쌍둥이 빌딩 사이를 외출 하늘 놓고 건너겠다는 꿈.

필리프는 이 때부터 건물 완공을 기다리며 자신의 몸에